부전공 이수자 선발 계획

1. 목 적

주전공 이외의 인접학문에 대한 이해확대와 학생들의 학구의욕을 충족시켜 급변하는 사회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강화하는데 있음.

2. 근 거

- 학칙 제36조, 학사업무에관한시행세칙 제27조

3. 주요내용

가. 부전공 이수 허용학과

- 모든 학과를 대상으로 하되, 간호학과, 치위생학과, 유아교육과는 부전공 대상이 될 수 없으며, 유아교육과를 제외한 이들 학과 소속 학생은 부전공을 이수할 수 없다.

나. 허용인원과 지원대상 및 자격

1) 허용인원 : 부전공 이수 허용인원에는 제한이 없음. 다만, 학과의 특성에 따라 제한을 둘 수 있음

2) 대상 및 자격 : 우리대학에서 30학점을 취득한 자로 한다.(당해 계절학기 성적 미포함)

4. 신청기간

- 2016년 1월 11일(월) ~ 1월 15일(금)

5. 신청 방법

- 신청 방법 : 소속 학과 또는 종합행정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→ CDP 교수 면담 → 종합행정센터 내 교무처 또는 소속 학과실 제출

6. 선발

가. 선발기준을 따로 정하고자 하는 학과에서는 복수전공이수자 선발 공고 이전까지 선발기준을 정하여 교무처로 제출 후 총장 승인

나. 동점자의 순위결정(다음 순서에 따름)

1)취득 성적 평균평점(소수점 이하 2째 자리까지 산출)이 높은 자

2) 취득학점이 많은 자

3) 고학년 자

다. 선발자 발표 : 2016년 1월 22일(금) 학과 통보 및 개별 통보

7. 이수 학점

- 부전공자는 수업연한의 범위 내에서 부전공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 중 해당학과에서 정한 학점(21학점)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

8. 학점 인정

- 부전공자는 부전공학과의 전공과목을 우선적으로 수강하도록 한다.
- 부전공 신청 전에 이수한 부전공 교과목은 부전공 학점으로 인정한다.
- 부전공 이수자가 부전공 이수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부전공으로 취득한 학점을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.

9. 졸업

- 부전공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졸업증서 및 학적부에 그 사실을 등재한다.

학과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졸업을 유보한다. 다만, 졸업예비사정 기간 중에 다전공취소신청서(부전공)를 제출 할 경우 주전공 졸업은 가능.

10. 대상 학과

구분	대상학과	제외학과	비고
주간	15개학과	7개학과	√ 제한 학과 : 유아교육과, 간호학과, 치위생학과, √ 다전공 미신청 학과: 건축공학과, 사회체육학과 √ 1학기 이모집 학과 : 언어치료 심리학과, 철도운수경영학과

야간	2개학과	1개학과	√ 다전공 미신청 학과: 사회체육학과

11. 유의 사항

- 금회 취소 자는 향후 부전공을 재신청 할 수 없음
- 부전공 취소 과정을 소홀히 하여 졸업이 되지 않은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기 바람.

2015년 12월 23일

송원대학교 총장